

◎기상청공고 제2022-73호

「기후업무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18일

기상청장

「기후업무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재검토기한 연장(안 제40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2년 6월 7일까지**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기후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
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
- 전자우편: orpark99@korea.kr
- 팩스 : 042-489-0365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(전화: 042-481-737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

바랍니다.